

2-231.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별약관

2-232.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별약관(갱신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의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별약관

구 分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순환계질환수술(1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1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1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2종)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2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2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3종)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3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3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4종)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4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4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5종)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5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5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별약관(갱신형)

구 分	최초계약		갱신후계약
	1년미만	1년이상	
특정순환계질환수술(1종, 당뇨병 및이상지질혈증포함)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1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1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1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2종)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2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2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2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3종)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3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3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3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4종)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4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4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4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5종)보장	특정순환계질환수술(5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특정순환계질환수술(5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특정순환계질환수술(5종)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주) 1.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의미합니다.

2. '1년 미만'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 시를, '1년 이상'은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수술 시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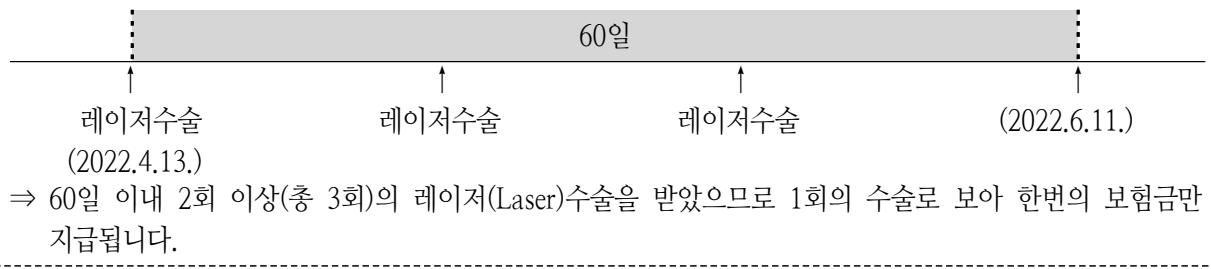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특정순환계질환수술(1종, 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 '특정순환계질환수술(2종)', '특정순환계질환수술(3종)', '특정순환계질환수술(4종)', '특정순환계질환수술(5종)' 중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2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회 이상 레이저(Laser)수술 시 보험금 지급 예시 〉



- ③ 보험수의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의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피임목적의 수술 및 검사,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 복강경검사 등),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녹내장 및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특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이라 함은 <별표65> '특정순환계질환(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 중 1종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순환계질환(1~5종)(당뇨병및이상지질혈증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납입면제)

- ①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고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계약의 자동갱신, 보험료 납입방법 및 자동갱신의 적용)에 의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계약의 보장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자동갱신, 보험료 납입방법 및 자동갱신의 적용)

이 조항은 갱신형 특별약관에만 적용합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운영(보험료 추가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의 사망[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소멸) 제2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③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